

2023년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지침(안)

2023. 3.

ITP 인천테크노파크
INCHEON TECHNOPARK

뿌리산업일자리센터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선정절차	2
제3장 채용	8
제4장 지원내용	9
[서식 및 별첨]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2023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내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지원사업”이라 함은 인천지역 근로자에 대한 고용불안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전담기관의 운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 근로자를 연계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 ② “전담기관”이라 함은 본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공고·선정·관리·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테크노파크를 말한다.
- ③ “주관기업”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소재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채용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공정기술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으로써 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⑤ “장려금”라 함은 주관기업이 지원받은 “뿌리기업 채용장려금”을 말한다.

제3조(추진근거)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
- ②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 ③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2장 선정절차

제4조(사업 추진 체계) 지원사업의 신청·지급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이다.

㉠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주관기업 →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관내 뿌리기업 -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신청서 검토 및 기업 선정	
전담기관 → 주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 자격검증 - 평가를 통한 최종선정 - 최종선정 기업 통보
↓	
㉢ 근로자 신규 채용	
참여근로자 ↔ 주관기업 전담기관 ↔ 주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침에 정의된 참여근로자 채용 - 전담기관에 채용통보 및 약정체결
↓	
㉣ 장려금 신청	
주관기업 →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 대상자 1개월 만근 후 신청 - 1~3개월 및 5개월차 신청
↓	
㉤ 신청서 검토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근로자의 재직현황 확인 및 중복지원 여부 등 장려금 지급 요건 확인 - 구비서류 보완 요청 시 기업은 10일 이내에 보완 하여야 하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	
㉥ 승인여부 통보 및 장려금 지급	
전담기관 → 주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이 결정된 기업에 1개월 이내 지급완료 - (채용인원 1명당) 월 200만원 x 3개월간 지급 - 5개월 만근시 추가 인센티브 100만원 지급
↓	
㉦ 사후관리	
전담기관 → 주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장려금 환수 - 기타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및 법적제재 - 사업기간 완료 후 연 1회 정기점검 (최대 3년)

제5조(사업공고) ① 전담기관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 반영된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 공고에는 사업목적, 지원내용, 신청자격, 선정방식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공고내용을 전담기관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 서비스(<http://bizok.incheon.go.kr>)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접수) 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서식 1]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2]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고용계획서’ 및 [서식 3]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격 체크리스트’에 지정된 제출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제출·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체크리스트 1부

2.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

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 ‘21, ‘22) 각 1부

- 검색기간 설정 : 당해연도 말일 기준

예시) 20년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검색 기간은 ‘2020.12.31 ~ 2020.12.31’ 로 한다.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6. 표준재무제표(‘20, ‘21, ‘22) 각 1부

- 공고 마감일 기준 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자는 19년, 20년, 21년 표준재무제표 제출

7.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8. (선택) 현장평가 가점서류 :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인증서(비전기업, 인천 유망중소기업, 중견채용사다리기업)

③ 전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에 보완 조치(회신)가 없으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업의 자격) ①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의 주소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부평구·서구’ 로 두고 사업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채용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뿌리기업이어야 한다.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뿌리기업 중 사업분야 분류코드가 [별첨 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에 해당하는 기업
2.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KPIC)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으로 인증된 사업장
3.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뿌리기술(공정) 활용업종과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품)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별도의 전문가 심의를 통해 참여자격을 인정받은 기업

② 위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인천소재의 ‘뿌리기업’ 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중인 경우
3.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4.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5. 휴·폐업중인 기업의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7. ‘2023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내 ‘뿌리산업 선도 모듈형 기업지원사업’ 또는 ‘대·중·소 협력모델 기반 현장애로 개선 지원사업’ 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8. 임금체불, 최저시급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 강요,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9. 인천지역에서 타 시, 도, 군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10. 그 외 선정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자격심사)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에 대해 지원 자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지표에 부합할 시 통과처리 한다. 단, 위기기업의 경우 적부판단 없이 해당 여부만 확인한다.

② 자격심사의 세부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다.

평가지표		평가방법	배점
자 격 심 사	뿌리기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이라도 해당하면 적합 -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해당기업, 별도 전문가 심의를 통해 참여자격을 인정받은 기업 	적/부
	상시 근로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적합 - 2023년 사업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적/부
	기업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적/부
	기업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인천 남동구 · 부평구 · 서구 일시 적합 	적/부
	국세 및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기간 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적/부
	4대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기간 내)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였으면 적합 	적/부
	위기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공정기술 뿌리기업 3개년도 평균 영업이익 감소기업 3개년도 평균 근로자수 감소기업 	해당/ 비해당

③ ‘위기기업’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으로 충족할 시, 제12조(참여근로자의 자격)에 따라 근로자 조건을 완화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별첨1]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중 ‘기반공정기술분야 뿌리기업’
2. 3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이 감소한 뿌리기업
3. 3개년도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뿌리기업

제9조(서류평가) ① 전담기관은 자격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② 주관기업은 서류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각 평가지표의 평가항목은 별도 표기된 측정방법에 의해 점수를 산출한다.
- ④ 가점 사항은 최대 10점으로 제한 한다. (각 항목당 5점)
- ⑤ 서류평가의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으며 총합 60점 이상 시 통과한다.

평가지표		평가항목(측정방법)		배점			득점
근로 복지 부분 (45)	고용 안정 (25)	사업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산업 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준 - 지점의 경우 본사 사업장의 업력인정 가능 	10년 이상	3년 이상 10년 미만	3년 미만	
		장기 근속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장기 근속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근속 근로자수/전체 직원수) - 사업신청 시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외국인 제외 	30% 이상	20%이상 30%미만	20%미만	
	복지 후생 (20)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교육훈련 관련 자료 (법정의무교육 등) 	실시-5점, 미실시-0점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실, 식당, 세미나실, 체력단련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시설 사진 등 (화장실 제외) ※ 미보유시 0점 	3개 이상	2개	1개	
기술 역량 부분 (35)	뿌리 기술 (25)	핵심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지정증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전문기업 지정증-15점 뿌리기업 확인서 -12점 무 - 0점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산업 관련 연구소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가입업체 - INO-BIZ(기술혁신형)기업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보유-10점, 무-0점			
	품질 인증 (10)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관련 인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 NEP,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인증 - KS, JIS, UL, CE, CCC 등 국내외 규격인증 - ISO, 싱글PPM, 6시그마 등 시스템인증 -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보유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미 보유시 0점 	3개 이상	2개	1개	
경영 부분 (20)	채용성 (20)	고용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인원/전체 직원수 - 2021년 12월 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대비 2022년 12월 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10% 이상	5%이상 10%미만	5% 미만	
		매출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최근년도 매출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전기매출액 - 최근년도 결산자료(이익계산서) 기준 	10% 이상	5%이상 10%미만	5% 미만	
가점(10) (중복가능)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채용사다리기업,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가점 :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2022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인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가점 : 5점				
합 계		100점 (가점 10점)					

제10조(심의평가) ① 전담기관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심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업경영·고용·기술 등 분야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5인 이내)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평가를 실시한다.

② 세부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산술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한다.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득점
정성평가 (100)	일자리 평가	■ 신규채용의 필요성 - 신규채용에 대한 배경 및 필요한 내용 평가 (0~25)	25	
		■ 인력 활용의 적정성 - 참여근로자의 업무수행 구체성 및 요구되는 전문성의 적합여부 평가 (0~25)	25	
		■ 일자리 지속성 - 근로환경, 노사관계, 복지수준, 일 생활균형 등 고용유지노력 평가 (0~25)	25	
	채용 가능성	■ 기업의 채용가능성 - 시장경쟁력, 기술력 등 기업의 채용성 (0~25)	25	
총 계			100	

③ 동점 시 선정기준은 ①일자리지속성, ②인력활용의 적정성, ③신규채용의 필요성, ④기업의 채용 가능성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제11조(주관기업 선정) ① 평가 점수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보완 등을 하여 주관기업 및 후보기업을 선정하고, 전담기관은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은 최종 선정결과에 대하여 주관기업에게 통보하고 장려금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
2. 주관기업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선정결과의 통보 이후 신규채용 위한 일체의 사항들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참여자격을 제한

② 전담기관은 선정된 주관기업의 사업포기 및 기타 지원 제외사항 발생 시 후보기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주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주관기업은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최소 1명 이상의 ‘참여근로자’ 를 채용하여야 한다.
- ④ 최종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는 주관기업은 참여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제3장 채용

제12조(참여근로자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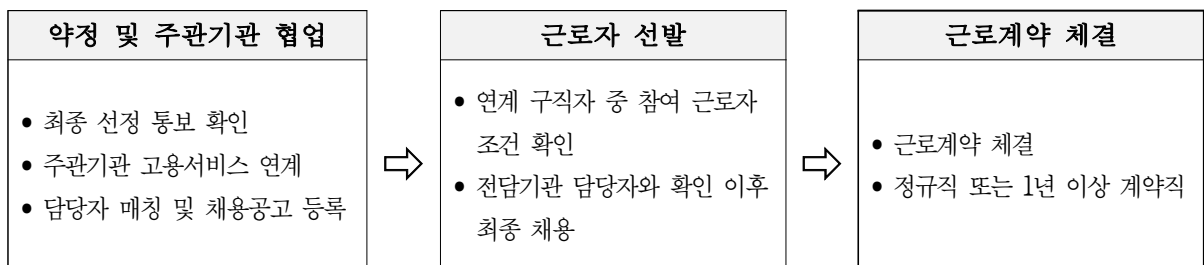
- ① 최종 선정된 주관기업은 ‘참여근로자’ 를 채용하여야 한다. ‘참여근로자’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인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용서비스(취업알선 등) 연계 인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 뿌리산업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및 재직자
 2. 참여근로자의 근로경력은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공문서 및 사업장의 직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 를 인정하며 그 외 제출자료는 전담기관의 검토 후 인정
 3. 뿌리산업분야 해당여부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에 표기된 사업장 중 업종분류코드가 뿌리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인정
 4. 그 외 뿌리산업분야 증빙은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및 ‘뿌리기업 인정 전문가 의견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에 한하여 인정
-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업이 ‘위기산업(기업)’ 으로 구분될 경우, 참여근로자 2명을 채용한 주관기업은 마지막 1명 채용 시 ‘참여근로자 조건’ 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서비스를 통해 채용하여도 참여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일반근로자 최대허용 정원 이내만 인정, 전담기관 문의 필수)

제13조(참여근로자 제외) 참여근로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③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8항 취업인정기준 준용)
- ④ 6개월 이내 재입사 시 참여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연계 없이 기업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

제14조(약정 및 채용)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의 채용대상자가 참여근로자 조건에 부합할 시 [서식9]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약정서’ 를 활용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 ② 약정이후 주관기업은 전담기관의 고용서비스 지원과 연계하여 채용을 진행한다.
- ③ 고용서비스로 연계되는 인원 중 제12조(참여근로자의 자격)에 해당되는 구직자만 참여근로자로 인정된다.
- ④ 주관기업은 신규채용 이후 전담기관에 [서식6]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채용통보서’ 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 ⑤ 주관기업은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지 후 재참여는 제한될 수 있다.



제4장 지원 내용

제15조(지원 범위) ① 주관기업당 최대 3명까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 ② 신규 참여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며 5개월 만근 시 추가 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 ③ 장려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대상자는 지원 한도(총 3명)인원에 포함한다.
- ④ 참여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16조(장려금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3개월 및 5개월 만근 시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②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고용보험가입이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3개월 이내 시용기간(수습기간)으로 계약된 경우,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직 전환 이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주관기업은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청으로 참여근로자의 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이월장려금 대상자는 상위기관의 승인여부에 따라 ‘4대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를 활용하여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급기한 및 방법) ①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매월 서류제출 완료 후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1개월 이내 장려금을 지급한다.

- ② 구비서류 보완요청 시 주관기업은 1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한다.
- ③ 장려금 지급신청서 상의 사업자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개인사업자는 사업

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계좌,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은행계좌로 지급가능)

제18조(중복지원 제한) ① 지원사업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주관기업이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2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한다.

②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사후관리) ① 전담기관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 최대 3년간,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② 주관기업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명부, 신규채용근로자 퇴사사유, 기업매출액, 만족도 조사 등 필요서류 제출 및 점검에 응해야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 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의거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하고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서식 및 별첨

[서식1]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3
[서식2]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고용계획서	14
[서식3]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격 체크리스트	16
[서식4] 기업정보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17
[서식5]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지급신청서	18
[서식6]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채용통보서	19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20
[서식8] 인권존중의무 서약서	21
[서식9]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약정서	22
[서식10]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지급내역확인서	25
[서식11]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퇴사 통보서	26
[서식12]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사직서	27
[서식13]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자격 및 서류평가표	28
[서식14]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심의평가표	29
[별첨] 뿌리산업 범위 분류코드	31

「2023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고용계획서				
기업현황	주요 사업내용	(생산품, 서비스 등 간략히)		
	매출액 (2022년)	백만원	전체 근로자 수 (신청일 기준)	명
	매출 증가율 (전년대비)	%	고용 증가율 (전년대비)	%
	교육훈련 여부 (2022년)	건	장기근속자 비율 (3년 이상)	%
	복지시설 개수	개	최저임금 준수	(예/아니오)
<p>* 매출액증가율 = (2022년 매출액-2020년 매출액)/2021년 매출액*100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p> <p>* 고용증가율 = (2022년 12월 고용보험가입자-2021년 12월 고용보험가입자)/2021년 고용보험가입자*100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p> <p>* 장기근속자 비율 = (3년 이상 근속 근로자수/2022년 12월 고용보험가입자)*100</p> <p>* 교육훈련 : 2022년 법정 의무교육 포함 모든 외부교육 인정</p> <p>* 복지시설 및 교육훈련은 반드시 증빙자료(사진, 문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야 점수로 인정</p> <p>* 복지시설 : 휴게실, 식당, 세미나실, 체력단련시설 등</p>				
기술현황	핵심기술 보유	<input type="checkbox"/> 뿌리기업확인서 <input type="checkbox"/> 뿌리기술전문기업		
	연구소 보유	<input type="checkbox"/> 기업부설연구소 <input type="checkbox"/> 산업기술연구조합 <input type="checkbox"/> INO-BIZ(기술혁신형)기업		
	품질 인증 보유	(ISO, KS, 6시그마 등)		
<p>* 핵심기술보유 :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p> <p>* 연구소 보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가입업체, INO-BIZ(기술혁신형) 인증</p> <p>* 품질관련 인증 : NET, NEP,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인증 KS, JIS, UL, CE, CCC 등 국내외 규격인증 / ISO, 싱글PPM, 6시그마 등 시스템 인증 특허권, 실용실안, 디자인 등록 보유</p>				
신청 배경 및 필요성	<p>※ 신규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사유와 이에 따른 사업장 전반에 미치는 기대효과 서술</p>			

<p>직무수행 계획 (신규채용자)</p>	<p>※ 예) 라인증설에 따른 조립원 채용으로 야간 근무 없이 주간근무만 수행할 예정 ※ 뿌리산업일자리센터 내 직업상담사가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매칭할 예정으로 자세히 작성할 것</p>	
<p>신규채용자 요구 전문성 (직무수행 관련 자격사항)</p>	<p>※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또는 필수사항 대한 서술</p>	
<p>근로환경 (복지시설 사진)</p>		
<p>신규채용근로자 근무지(예정) 장소 사진 ※ 업무공간, 사업장 외부 전경 등</p>		

【서식 3】「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채용장려금 지급을 위해선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체크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해당 시 지원지급이 불가합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임금 체불 중 또는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닙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의 채용 전 6개월 이내 관련 사업주가 아닙니다. ※ 단, 공백기간이 아닌 타기업 재직 이후 이직 시 센터에 문의 필요)		
3.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청 대상 근로자 채용 등의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2 참조		
■ 근로자 요건		
1. 참여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입니다.		
2. 참여근로자는 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입니다.		
3. 참여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참여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참여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기타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시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사업장명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동의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1.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참여 : 접수/지원 등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사후관리 :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기업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4대보험 가입현황 • 이메일 • 연락처 • 신청과 관련된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기업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는 인천시(군·구 포함), 인천테크노파크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업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제3자 (제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군·구 포함),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본원 업무 관련
제공하는 기업정보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4대보험 가입현황 • 이메일 • 연락처 • 공장등록증 등 사업 참여 신청을 목적으로 한 정보
보유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종료 후 3년 간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기업정보수집 동의 거부권리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등 사업의 신청, 수혜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 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운영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미동의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약정서

제1조(목적) 인천테크노파크(이하 “운영기관” 이라 한다)와 참여기업 _____(이하 “참여기업” 이라 한다)간에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참여근로자 지원내용) “운영기관” 이 “참여기업” 에게 참여근로자 1인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장려금 지원	참여근로자 입사일로부터 3개월 + 5개월 만근 시 추가 지원	월 2,000,000원 (1~3개월) 추가 1,000,000원 (5개월 만근시)

※ 지원 기간은 예산 등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축소될 수 있음

제3조(참여기업의 협력의무) ① “참여기업” 은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변경된 내용이 있을시 관련사항을 “운영기관” 에게 통보해야하며, “운영기관” 은 변경된 내용이 사업 참여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사업참여를 유보 또는 종료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은 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참여기업” 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근태관리 등을 위한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참여기업” 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 은 “참여기업” 에게 약정기간 동안 참여근로자가 1개월 만근 시 1인당 월2,000,000원(최대 3개월)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5개월 만근 시 1,00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 은 근무 중인 참여근로자에 대한 “운영기관” 의 지원금 수령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지원금 신청 시 급여대장 및 임금 증 사본 등 필요 제반서류를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 은 “참여기업” 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참여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참여기업”은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본 약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수급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경우(근로자 임금 편취 포함)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벌) “참여기업”은 근무 중인 참여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를 5일 이내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참여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채용된 참여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참여기업”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⑤ “참여기업”에서 신규채용한 참여근로자에 대한 비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 대체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참여기업”은 사업에 참여중인 참여근로자를 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인건비 명목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참여기업”은 지원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운영기관”에게 반환해야 하고, “운영기관”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해지 등) “참여기업”은 장려금사업 종료이전에 중도해지(퇴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근로자 채용)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 채용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2조(감독상의 조치) ①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뿌리기업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근로자 근태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금을 회수한다.

제13조(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부정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1.01.01.) 및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한다.

제14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지침 및 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운영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직인

참여기업) 사업자명 대표자명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2023 뿌리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지급내역 확인서

기업현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총괄담당자	
	소재지주소			
	실무담당자		전화번호	
지급 내용	해당근로자			
	지급 금액			

상세 지급 내역(예시)

(단위 : 만원)

해당 근로자	'23년 6월	'23년 7월	'23년 8월	합 계
박○○	200	200	200	600
박○○	-	200	-	200
배○○	-	200	200	400
김○○	-	-	-	-
합 계	200	600	400	1,200

상기 내용대로 해당 업체에게 뿌리기업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	--	----------	--

□ 자격심사 (지원사업 대상여부 확인)

No.	항목	검증 내용	통과 여부		No.	항목	검증 내용	통과여부	
1	위기기업		○ 해 당 ○ 비해당		4	기업소재지		○	X
	영업이익 감소율				5	기업규모		○	X
	고용 감소율				6	국세, 지방세 완납		○	X
2	뿌리기업 확인		○	X	7	4대보험 완납		○	X
3	상시근로자수		○	X	자격심사 결과			적합	부적합

□ 서류평가(자격심사 적합 시 서류평가 진행)

평가지표		평가항목(측정방법)		배점			득점
근로복지부분 (45)	고용안정 (25)	사업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산업 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기준 - 지점의 경우 본사사업장의 업력인정 	10년 이상	3년이상~10년 미만	3년 미만	
		장기근속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장기 근속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근속 근로자수/전체 직원수) - 2021년 12월 말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기준 	10점	7점	4점	
	복지후생 (20)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무교육 등 교육훈련 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교육훈련 관련 자료 	실시-5점, 미실시-0점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실, 식당, 세미나실, 체력단련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시설 사진 또는 영상 (화장실 제외) 	3개 이상	2개	1개	
기술역량부분 (35)	뿌리기술 (25)	핵심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뿌리기술 관련 공정/제품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지정증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전문기업 지정증-15점 뿌리기업 확인서-10점 무 - 0점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산업 관련 연구소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가입업체 - INO-BIZ(기술혁신형)기업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보유-10점, 무-0점			
	품질인증 (10)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관련 인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 NEP, GS,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인증 - KS, JIS, UL, CE, CCC 등 국내외 규격인증 - ISO, 싱글PPM, 6시그마 시스템인증 - 특허권, 실용실안, 디자인 등록 보유 ※ 유효(인증)기간 내 인정 	3개 이상	2개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점 7점 4점 							
경영부분 (20)	채용성 (20)	고용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인원/전체 직원수 - 2021년 12월 고용보험취득자 명부 대비 2022년 12월 고용보험취득자 명부 	10% 이상	6%이상~10%미만	6%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점 7점 4점 					
가점(10) (중복가능) *유효기간 내 인정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채용사다리기업,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2022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인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가점 : 5점				
			가점 : 5점				
합 계		110점 (가점 10점포함)					

□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심의평가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특점
정성평가 (100)	일자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의 필요성 - 신규채용에 대한 배경 및 필요한 내용 평가 (0~2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활용의 적정성 - 참여근로자의 업무수행 구체성 및 요구되는 전문성의 적합여부 평가 (0~2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지속성 - 근로환경, 노사관계, 복지수준, 일 생활균형 등 고용유지노력 평가 (0~25) 	25	
	채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채용가능성 - 시장경쟁력, 기술력 등 기업의 채용성 (0~25) 	25	
총 평가점수			100	

평가의견	
------	--

심사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

평가위원 : (서 명)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1. 주조산업 (17)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31(기반공정)	주철관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311(기반공정)	선철주물주조업
24312(기반공정)	강주물 주조업
24321(기반공정)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기반공정)	동주물 주조업
24329(기반공정)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9230(기반공정)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26)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294(기반공정)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열처리산업 (2)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921(기반공정)	금속 열처리업
29150(기반공정)	공업용로, 전기로

4. 표면처리산업 (16)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기반공정)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5922(기반공정)	도금업
25923(기반공정)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기반공정)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기반공정)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기반공정)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기반공정)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28909(기반공정)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표면처리), 아크 용접기 및 저항 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용접)
29299(기반공정)	금속 표면처리기

5. 소성가공산업 (10)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21(기반공정)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기반공정)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기반공정)	철강선 제조업
24221(기반공정)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기반공정)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기반공정)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기반공정)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기반공정)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4(기반공정)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9224	액압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6. 용접산업 (7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32(기반공정)	강관 제조업
24133(기반공정)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기반공정)	기타 1차 비철금속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기반공정)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기반공정)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기반공정)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95(기반공정)	용접봉
26224(기반공정)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기반공정)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기반공정)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기반공정)	전자카드 제조업
26294(기반공정)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기반공정)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기반공정)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1	전기 정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29199(기반공정)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71(기반공정)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기반공정)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기반공정)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기반공정)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기반공정)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기반공정)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기반공정)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기반공정)	강선 건조업
31112(기반공정)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기반공정)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기반공정)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01(기반공정)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기반공정)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기반공정)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기반공정)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기반공정)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기반공정)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기반공정)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7. 사출 · 프레스산업 (2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9292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진공 및 열 성형기,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고무 가공기계

8. 정밀가공산업 (3)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9221	레이저가공기, 방전가공기,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	머시닝센터, 전용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용),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9. 적층제조산업 (1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10.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산업 (4)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9291	기타종이가공기계

11. 로봇산업 (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2. 센서산업 (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산업 (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